무임관리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 학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사회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것이 자연스러운 생활관습으로 되고있다.》(《김정일선집》 중보관 제5권 66폐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애호관리하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민사법률관계에서 무임관리는 계약에 기초함이 없이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법률사실로 된다. 민사법률관계에서 대부분의 채권채무관계는 쌍방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일련의 경우 채권채무관계는 계약이 아닌 다른 법률사실들을 그 발생기초로 하고있다. 그러한 법률사실로서는 대표적으로 무임관리나 부당리득, 불법침해 등을 들수 있다. 여기 서 무임관리나 부당리득, 불법침해는 쌍방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계약외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라고도 한다.

채권채무관계의 중요한 발생기초로 되는 무임관리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는것은 무임 관리를 통한 당사자들의 재산상권리와 리익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무임관리는 어떤 사람이 법적의무없이 다른 법인이나 공민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것을 말한다. 즉 무임관리는 어떤 사람이 법이나 계약에 기초함이 없이 다른 법인이나 공민들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사법률관계에서 무임관리는 해당 재산에 대한 본인의 재산상권리와 리익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있다. 이에 따라 무임관리와 관련한 법조문들에서는 무임관리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의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그것을 재산임자에게 정확히 반환하는것을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고있다.

무임관리와 관련한 법적기초는 공화국민법 제175-176조를 들수 있다. 해당 조문들에 서는 공민은 법적의무없이 다른 공민이나 법인의 재산을 보관관리할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반환할 때까지 잘 보관관리하며 그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대금을 재산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무임관리는 법이나 계약에 기초함이 없이 다른 법인이나 공민들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실례로 류실물에 대한 제3자의 보관관리를 들수 있다. 여기서 해당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제3자는 무임관리자로 되며 재산의 소유권자나 점유자는 본인으로 된다. 무임관리는 법적의무없이 다른 법인이나 공민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도의적인 행위로된다. 따라서 법이나 계약을 통한 의무를 지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는일종의 대리행위로서 무임관리로 인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무임관리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띠기도 한다. 즉 무임관리에는 다른 사람의 사무처리를 대신하는 행위도 포함될수 있다.

그러나 무임관리의 보편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법적의무없이 보관관리하는 행

위에 중심을 두고있으며 그와 관련한 내용들로 구성되게 된다.

무임관리는 일종의 사실적행위에 속한다. 무임관리는 해당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데서 무임관리자의 보관관리행위를 기초로 하는것만큼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사실에서 사실적행위에 해당된다.

무임관리는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로 된다. 무임관리는 비록 법적의무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이지만 재산보관자와 물건주인에게 해당 재산을 돌려주고 받을데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무임관리에서 무임관리자는 물건주인에게 해당 재산을 원상그대로 반환할 의무를 지니며 물건주인은 그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무임관리는 법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행위로 된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법적의무 없이 보관관리하는 행위는 외형상 본인의 합법적인 권리에 간섭하는 행위로 볼수 있다. 만 일 이러한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합법적인것으로 되자면 법이나 본인의 승인을 기초 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법률관계에서는 법이나 본인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법에 위반되는것으로 보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가 무임관리의 성립조건에 부합되면 관리자와 본인사이에 해당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것으로 규제하고있다.

무임관리는 계약이나 부당리득, 불법침해와 함께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법률사실로 되지만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무임관리는 우선 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무임관리와 계약은 다같이 민사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사실로 되지만 계약은 민사법률행위이며 무임관리는 사실적행위이다. 계약은 언제나 쌍방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되며 당사자들은 그에 맞는 민사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임관리는 무임관리자의 일방적인 재산보관행위를 기초로 하며 쌍방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

무임관리는 또한 부당리득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무임관리는 무임관리자의 관리의사에 기초하여 본인을 위해 그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로서 해당 재산에 대한 무임관리자의 보관관리의사를 중요한 성립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부당리득은 해당 재산에 대한부당리득자의 관리의사를 성립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부당리득자의 리득과 상대방의 손실을 중요한 성립조건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무임관리에서는 부당리득의 성립조건이 없을것을 요구한다. 만일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거기에 무임관리로 인정할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부당리득이 아니라 무임관리로 인한 법적효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무임관리는 또한 불법침해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무임관리는 합법적인 행위이지만 불법침해는 위법적인 행위이다. 즉 무임관리에는 위법성이 없지만 불법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비법적으로 침해하는 가해자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법에 어긋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임관리가 아니라 불법침해로 인한 법적효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무임관리는 또한 무권대리와도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무임관리는 법이나 계약에 기초함이 없이 본인의 리익을 위해 그의 재산을 보관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무권대리와 서로 류사한 내용을 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무임관리와 무권대리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엄격히 구별된다. 무임관리는 사실적행위로서 법률행위로 되는 무권대리와 구별되며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무임관리자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행위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무임관리에서는 무권대리에서의 본인의 사후승인으로 인한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임관리자와 본인외에 제3자의 참가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무임관리는 사람들의 사회생활과정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를 통하여 해당 재산이 부당하게 류실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무임관리는 무임관리자가 본인의 재산상권리와 리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할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있다.

이로부터 무임관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것인가 하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한다. 즉 무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본인의 리익을 기준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보관관리자의 리익을 기준으로 할것인가 하는것이 규제내용의 중심으로 된다. 이와 관련한 법적요구는 무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철저히 본인의 재산상권리보호에 중심을 두면서도 무임관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에서 규제하는것이다.

무임관리는 일련의 조건을 성립기초로 한다.

무임관리가 성립되자면 우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무임관리자의 행위는 무임관리의 선차적인 성립조 건으로 된다. 무임관리가 성립되자면 반드시 자기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 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임관리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류의할것은 무임관리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잘못 알고 해당 행위를 수행하거나 물건주인의 전속적권리에 속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무임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무임관리가 성립되자면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한 무임관리자의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해당 재산에 대한 무임관리자의 관리의사가 없는 행위에 무임관리로 인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킬수 없다. 재산에 대한 관리의사는 무임관리자의 일방적인 관리행위로 표현된다. 무 임관리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표현되는 관리행위에는 재산에 대한 보관이나 리용, 개량, 처 분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무임관리자의 법적의무는 어디까지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것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임관리자는 해당 재산을 리 용하거나 개량, 처분할수 없다.

무임관리가 성립되자면 또한 관리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

해당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가 무임관리를 성립하자면 무임관리자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의무가 없어야 한다. 만일 무임관리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무임관리라고 말할수 없다. 무임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계약상의무를 지니거나 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무임관리는 성립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무임관리가 성립되자면 또한 무임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위반되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 어긋나게 해당 물건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는 무임관리로 인한 효과를 발생시킬수 없다. 무임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와 어긋나게 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은 부당한 관리로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일련의 불법침해를 구성할수 있다.

무임관리가 성립되면 그에 따르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무임관리가 성립되면 무임관리자와 본인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며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무임관리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임관리자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무로 된다. 본래 무임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법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무임관리가 성립되면 무임관리자는 본인의 재산을 법적요구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무임관리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를 본인의 의사에 맞게 하여야 한다. 본인의 의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무임관리자는 해당 재산의 성질에 맞게 본인의 리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보관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무임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게 보관관리를 하거나 그로 하여 본인의 현존리익이 침해되였다면 그 한도에서 무임관리자의 관리비용청구권은 제한을 받게 된다.

무임관리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무임관리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임관리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 후에 관리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임관리자의 이러한 통지는 통지가 가능한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무임관리자에게 통지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무임관리자가 통지가가능한 조건에서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무임관리자는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수 없으면 필요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그래도 본인을 알수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을 국고에 넣어야한다.

무임관리자의 통지를 받은 본인은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인은 통지를 받은 후 무임관리자에게 위임형식으로 관리의무를 계속 지울수 있으며 무임관리를 결속하고 해당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다. 본인이 무임관리자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를 위임하였으면 본인과 관리자사이에 위임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관리자는 재산보관관리를 본인의 의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하며 그 정형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이 무임관리자의 통지를 받고 그에 대한 반환을 즉시 요구하면 무임관리자는 관리의무를 중지하고 해당 재산을 본인에게 정확히 반환하여야 한다.

무임관리자는 본인을 상대로 해당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무임관리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확히 반환한 조건에서 본인에게 보관관리에 소비한 자기의 비용을 보상해줄것을 청구할수 있다. 무임관리자가 청구할수 있는 보관관리비용은 해당 재산의보관관리에 실지 소비한 비용범위를 기초로 한다. 무임관리자가 불필요한 보관관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필요이상의 비용을 소비하였다면 그에 대한 청구는 제한을 받게 된다. 본인은 무임관리자의 보관관리비용청구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본인이 관리비용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임관리자는 법에 따라 해당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우리는 채권채무관계의 중요한 발생기초로 되는 무임관리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민사실천에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그를 통한 당사자들의 재산상권리와 리익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것이다.